

##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신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31조, 제33조 및 제44조에 따라 부산-김해경전철(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신호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용역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선정을 위하여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철도 신호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심사평가기준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평가기준은 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적용한다. 단,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의 용역이라도 발주처에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기준에 적용하는 경력 및 실적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용역으로 한다.

**제3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동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신호제어)으로 등록한 업체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2]의 등록분야 중 신호제어 분야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

**제4조(낙찰자 결정)** ①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별표 2]와 같다.

②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③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④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적용한다.

⑤ 동점자가 다수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순서를 결정한다.

1. 입찰금액이 낮은 순

2. 용역금액(동일 및 유사용역 합산)이 큰순

3. 용역건수(동일 및 유사용역 합산)가 큰순

4.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순

5. 상기 조건으로 평가순서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무작위 추첨(공정추첨프로그램 유니피커, [www.unipicker.com](http://www.unipicker.com))에 의한다.

**제5조(제출서류)** 심사평가에 관련된 서류 제출은 입찰공고 제출기간내 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에 도착한 신청서는 받지 않는다.

**제6조(평가방법)** ① 심사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판단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주처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심사평가 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⑤ 심사평가서 제출 후 입찰참가자격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제외한 참여기술자로만 재평가하여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자격자 선정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단, 참여기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격에서 제외한다.

**제7조(평가기준일 등)**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그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발주처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평가결과는 해당 입찰자가 요청시 본인 결과만 개별 통보한다.

③ 해당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된 최종 평가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공고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제9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자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시

② 심사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철도건설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입찰참가업체는 자기평가 실시 후 심사평가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심사항목의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2. 항목당 평가점수는 배점을 초과할 수 없다.

## [ 별표 1 ]

심사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배점	자기 평점	심사 평점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15]			절대평가
가. 등급	5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5			
나. 경력	10			
1) 책임기술인	5			
2) 참여기술인	5			
2. 동일용역 수행실적	[15]			절대평가
가. 용역건수	10			
나. 용역금액	5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가. 용역건수	6			
나. 용역금액	4			
4. 경영상태	[10]			절대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0			
5. 입찰가격평가	[50]			절대평가
입찰가격평가	50			
6. 계약질서준수				

[ 별표 2 ]

## 심사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1. 참여기술인(15점)

#### 가. 공통사항

- 1)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3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심사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2)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범위와 기술인 등급은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 3) 발주자 범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기관, 도시철도기관을 말하며, 해외 실적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실적만 인정한다. 해당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철도분야: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분야를 말한다.

나) 동일분야: 철도건설법 시행령 별표 5의2의 등록분야 중 신호제어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을 말한다.

다) 유사분야: 철도분야 중 신호제어 분야의 시공, 감리, 설계, 유지관리 용역 등을 말한다..

#### 4) 참여기술인의 구성

가) 책임기술인 1명(신호 분야 특급), 참여기술인 3명(신호 분야 고급 1명, 중급 2명) 등급이상

나) 참여기술인 구성이 해당 등급의 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 5)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6) 책임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에 대한 등급, 경력 및 실적의 평가는 용역규모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등급 이상의 기본 참여기술인에 대하여만 평가를 하고 기타 참여자에 대하여는 평가를 하지 않으며, 심사평가서에 제출한 참여기술인 중에서 업체가 지정한 자로 한다.

용역 규모	등급별 인원(명)			
	계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5억미만	3	1	1	1
5억이상 10억미만	4	1	2	1
10억이상 20억미만	5	1	2	2
20억이상	6	1	2	3

※ 참여기간이 전체 용역기간의 1/3 미만인 경우 해당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7)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

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별도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 심사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당해 용역사업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기간 중 퇴직·사망한 경우에는 해당기술인을 제외한 참여기술인으로만 사업수행 능력을 재평가하여 입찰참가적격여부를 결정한다.
- 8)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및 제31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며, 해당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격처리(해당업체를 심사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밀진단 용역 또는 정밀진단 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성능평가 용역의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처리한다.
- 9) 경력 및 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2천만 원 이상만 인정한다.
- 10) 참여기술인의 유지관리 경력 및 실적은 경력평가 시에만 적용하고 실적평가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등급(5점): 절대평가**

- 1) 책임기술인 : 신호분야 특급기술인 1명
- 2) 참여기술인 : 신호분야 고급기술인 1명, 중급기술인 2명
- 3) 발주처가 제시한 등급 및 인원 참여시 배점한도인 5점을 부여한다.
- 4) 발주처가 제시한 등급 및 인원 미달인 경우 실격처리(전체 0점)

**다. 경력(10점): 절대평가**

- 1)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단 합산한 경력은 월 단위로 인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15일 미만은 버리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한다.)

가) 책임기술인 (5점)

구 분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4년미만
책임기술인	5점	4.75점	4.5점	4.25점	4.0점

나) 참여기술인 (5점)

구 분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4년미만
참여기술인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참여기술인 수로 나누어 평가

2. 동일용역 수행실적(15점): 절대평가

가.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 (10점)

구 분	5건	4건	3건	2건	1건
점 수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나. 업체의 용역 수행금액 (5점)

구 분	3.2억이상	2억8천만원이상 3억2천만원미만	2억4천만이상 2억8천만원미 만	2억원이상 2억4천만원미 만	2억원미만
점 수	5.0점	4.75점	4.5점	4.25점	4.0점

다. 동일분야 공종

공 종	동일분야
신호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신호제어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 1) 철도건설법 제44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을 받은 용역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 2) 용역실적(용역건수 및 용역금액)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의 경우 100%, 5년초과 10년이내의 경우 70%, 10년초과의 경우 20%를 적용하여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 3)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철도건설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신호 분야의 동일분야 실적에 한하여 100% 반영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절대평가

가. 업체의 용역 수행건수 (6점)

구 분	8건이상	6건이상 8건미만	4건이상 6건미만	2건이상 4건미만	2건미만
점 수	6.0점	5.0점	4.0점	3.0점	2.0점

나. 업체의 용역 수행금액 (4점)

구 분	8억이상	6억이상 8억미만	4억이상 6억미만	2억이상 4억미만	2억미만
점 수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다. 유사분야공종

공 종	유사분야
신호	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신호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공감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적합성검증

- 1)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의 경우 100%, 5년초과 10년이내의 경우 70%, 10년초과의 경우 20%를 적용하여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 2) 공동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용역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한다.
- 3)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반영되는 용역금액은 2천만 원 이상만 인정한다.
- 4) 시공은 현장대리인의 경력만 인정한다.
- 5) 물품구매 건에 포함되어 있는 시공의 실적 인정은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발급된 실적증명서상 공종, 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실적 인정한다.
- 6)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평가 시, 시공은 건별 준공금액의 10%만 인정한다.

#### 4. 경영상태 평가등급(10점): 절대평가

-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한다..
- 2) 세부내용은 별표 3을 따른다.

#### 5. 입찰가격평가(50점): 절대평가

- 1) 입찰자격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평가하여 낙찰자로 선정한다.
- 2) 입찰가격 평가 시 입찰가격은 천원 단위에서 절사한다. (예) 34,232,600원 → 34,232,000원
- 3) 백분율 산출 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87.00472% → 87.005%
- 4) 세부내용은 별표 4을 따른다.

#### 6. 계약질서준수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으로 공개된 업체(명단 등재된 횟수당 0.5점 감점)

#### 7. 기타사항

##### 가. 평가 중단

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는 평가를 중단한다.

- 1) 입찰안내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업체
- 2) 평가기간(공고일로부터 입찰참여 통보를 받기 전까지)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

##### 나. 평가점수

평가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평가 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로 평가한다.

- 다. 용역수행실적 등 각종 증빙서류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재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원본대조 확인 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복합공종으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공종 구분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 라.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처분한다.
- 마.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 바. 장기계속용역은 각 차수별 준공·기성실적을 각 1건으로 평가하고, 계속비 용역은 연도별 이행금액 실적을 각 1건으로 평가한다.



[ 별표 3 ]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2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7.4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6.6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8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2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4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6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00
미 제 출			0

[ 별표 4 ]

## 입찰가격평가

기초금액	배점
기초금액의 47.50% 미만	50.0
기초금액의 47.50% 이상 49.00% 미만	48.6
기초금액의 49.00% 이상 50.50% 미만	47.2
기초금액의 50.50% 이상 52.00% 미만	45.8
기초금액의 52.00% 이상 53.50% 미만	44.4
기초금액의 53.50% 이상 55.00% 미만	43.0
기초금액의 55.00% 이상 56.50% 미만	41.6
기초금액의 56.50% 이상 58.00% 미만	40.2
기초금액의 58.00% 이상 59.50% 미만	38.8
기초금액의 59.50% 이상 61.00% 미만	37.4
기초금액의 61.00% 이상 62.50% 미만	36.0
기초금액의 62.50% 이상 64.00% 미만	34.6
기초금액의 64.00% 이상 65.50% 미만	33.2
기초금액의 65.50% 이상 67.00% 미만	31.8
기초금액의 67.00% 이상 68.50% 미만	30.4
기초금액의 68.50% 이상 70.00% 미만	29.0
기초금액의 70.00% 이상 71.50% 미만	27.6
기초금액의 71.50% 이상 73.00% 미만	26.2
기초금액의 73.00% 이상 74.50% 미만	24.8
기초금액의 74.50% 이상 76.00% 미만	23.4
기초금액의 76.00% 이상 77.50% 미만	22.0
기초금액의 77.50% 이상 79.00% 미만	20.6
기초금액의 79.00% 이상 80.50% 미만	19.2
기초금액의 80.50% 이상 82.00% 미만	17.8
기초금액의 82.00% 이상 83.50% 미만	16.4
기초금액의 83.50% 이상 85.00% 미만	15.0
기초금액의 85.00% 이상 86.50% 미만	13.6
기초금액의 86.50% 이상 88.00% 미만	12.2
기초금액의 88.00% 이상 89.50% 미만	10.8
기초금액의 89.50% 이상 91.00% 미만	9.4
기초금액의 91.00% 이상 92.50% 미만	8.0
기초금액의 92.50% 이상 94.00% 미만	6.6
기초금액의 94.00% 이상 95.50% 미만	5.2
기초금액의 95.50% 이상 97.00% 미만	3.8
기초금액의 97.00% 이상 98.50% 미만	2.4
기초금액의 98.50% 이상	2.0